



2025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국민체감도 조사 및 외부 평가 등을 거쳐
8개 우수사례를 선정 및 시상 -

I. '25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5.7.18일(금)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5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하였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2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27일(금)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대행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의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하였다.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3명 위촉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II. 수상 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8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방안 도입 및 내실화”와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3년 20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등 4건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사례들이 장려상을 받았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 시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新제재수단 도입”,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길을 마련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3종 세트”,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한 “금융 위원회 및 범정부 재난 대응 적극 수행” 등이 선정되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홍수정	(02-2100-2801)
		담당자	사무관	최치욱	(02-2100-2804)



참고

2025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8건)(요약)

사례	주요 내용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방안 도입 및 내실화 (박민규 사무관)	□ (내용) 부처(금융위·고용부 등) 간 협업 유도 및 현장 의견 청취로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24.1월 전면 개시)'을 고도화('24.6~12월, '25.3월)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합지원 연계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수혜자 금융여건이 개선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기여 □ (성과) ○ (연계자 수) '23년 대비 44.5%(+25,616명, '24.11월 기준) 증가 ○ (연계 대상자) 고용·소득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연계 분야별로 60~90% 내외) ○ (정책 실효성) 수혜자의 고금리 대부잔액, 연체자 비중 등 금융여건 개선 ○ (정책 만족도) 대부분의 이용자가 만족(81.2%) 및 재이용 희망(91.0%) □ (적극행정) ○ (방안 마련) 기관장 MOU 적극 체결(금융위(위원장)-부산(시장)('25.4.11일) 등)로 기관 간 복합지원 분야 확대·시행 관련 사항 전향적 추진 합의 ○ (도입 초기) 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 기관 직원들과의 적극 면담·회의('24.7월)를 통해 연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도입('24.8월~) ○ (도입 중기) 고용부·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집중 교육('25.4월~) 등 고용·복지 상담직원 업무 역량 향상 및 포상 방안 신설('25.4월~) 등 복합지원 업무 적극 수행 유도 방안 마련
우 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유원규 사무관)	□ (내용)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국민이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축 □ (성과) ○ 신변중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고 대부업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24.9.11일)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24.12.27일, 본회의 통과) ○ 법률 통과 이후 대부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준비('25.7.22일 시행예정) ○ 한편,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를 마련한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등에 힘입어,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리금 반환토록 한 최초 판결('25.5.29일)을 금감원·법구공 등을 통해 이끌어냄 □ (적극행정) ○ 기존에 단순히 '불법사금융 이자를 제한'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민법상 원리에 반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 및 논리 등으로 관계기관 등을 설득 - (방안 발표) 국조실, 법무부 등 협의를 거쳐 민법·상법상 원리를 고려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방안 집중논의('24.8~9월) → 민법상 원리에 반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대부업법에 열거하여 무효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 - (법안 통과)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실에 지속 방문·협의('24.11월중)하여,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반사회적 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효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 적극 설명

	사례	주요 내용
	3년 20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김진주 주무관)	□ (내용) 3년간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 적극위 의결을 거쳐 산은의 조달금리보다도 낮은 국고채 수준으로 신규 반도체 설비투자·R&D 자금을 제공하게됨 ○ 산은 실무자 부담 경감 결과 사업이 성공적 집행  규모 확대(당초 17조원 →20조원), 및 여타 첨단산업까지 지원범위 확대(1차 추경시 既반영) □ (성과) ○ 적극위 의결을 통한 산은 직원 부담 감소 등의 결과, 현장 창구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상담 및 업무수행이 가능해졌음 ○ '25.1.24일 국고채 수준으로 대출이 시행된 이후 반도체 설비투자기업의 신규설비투자에 2%대 저리지금이 지원되었음 (5월까지 네달만에 4조원 이상) ○ 시장의 반응이 좋고, 단시간내 높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25.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를 3년 17조원(25년 4.25조원)에서 3년 20.4조원(25년 7.65조원)으로 +3.4조원 확대하고, - 반도체 외 첨단산업에 대한 저리지원 프로그램도 신설(25년 1차 추경 총 1조원 규모)하였음 □ (적극행정) '25.1월 실제 재정이 투입되었으나 여전히 실무적으로는 전례없는 초저리에 취급에 어려움을 토로  적극위 의결을 통해 산은 조달금리보다 낮은 국고채 수준 저리지원 프로그램의 적극 집행을 지원하였음
우 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정수종 사무관)	□ (내용) 가상자산시장 투기과열 우려로 '17년 말부터 8년간 금지되어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매매 거래 등)를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허용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발표(2.13일) → 후속 조치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5.1일)하고, 첫 현금화 사례까지 발생 □ (성과) ○ 현금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글로벌 기부단체인 월드비전에서 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기부금을 최초로 현금화(6.1일) ※ 월드비전에서 기부받은 가상자산 중 일부인 0.55 이더리움(ETH), 약 200만원 현금화 - 또한, 일부 거래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문화 정립 움직임도 모색 ※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는 추세 (예 美 기부플랫폼인 기빙블록(Givingblock)의 '24년 가상자산 기부금은 10억\$ 이상) → 8년 만에 처음으로 허용된 가상자산시장 법인 참여를 통해 국내 시장의 제도화 수준 및 글로벌 정합성이 진일보하였다는 평가(언론 등) □ (적극행정) ○ (정책방향 설정) '17년부터 누적되어온 시장관행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안정과의 정책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충분한 현장의 의견수렴 진행 ○ (정책 로드맵 마련) 「가상자산위원회(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참여)」 및 관계기관(금감원, 은행연 등) 논의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25.2.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 (비영리법인·거래소 허용) 정책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 발표(5.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사례	주요 내용
장 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新제재수단 도입 (이지호 사무관)	□ (내용)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효과적인 대응, 재범(再犯) 억제에 있어 형벌·과징금 등 전통적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 ➔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①계좌 지급정지(최대 1년)와 ②위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최대 5년)하는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제재시행 체계 구축·시행('25.4~)) □ (성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기대이익을 줄이고 위반자를 행정제재로 자본시장에서 장기간(최대 5년)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지급정지) 금융위 의결로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가능(최대 1년) -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선임 제한명령)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선임과 재임(在任)을 제한하는 명령을 금융위 의결로 부과(최대 5년) ➔ 불법이익 등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지고 위반 행위자의 자본시장 퇴출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적극행정) ○ (법 통과) 세미나 개최('24.8), 국회설명 지원 등을 통하여 주요국 사례(미국·캐나다 등)를 공유하는 등 제도도입 필요성을 지속 홍보·설득 ○ (제도정비)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과 수사기관,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권과의 제재시행 체계 협의·구축에 기여
	사망보험금 유동화 (윤세열 사무관)	□ (내용) 노인빈곤(OECD 최하위 수준) 등 생활이 어려워도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은 활용할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이 된 종신보험이었으나,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약 34만건, 약 12조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 지원 가능(연금형,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 출시) □ (성과) ○ (연금형)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200% 내외)을 수령하면서도, 잔여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음 ⇒ 無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 ○ (서비스형)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없이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 →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 ⇒ 서비스를 별도 이익없이 제휴비용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편익 강화 □ (적극행정) 유동화 가능계약이 많지 않고,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높아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관계부처 협의와 보험업계 설득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비 수취 없이 비과세 혜택도 부여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마련

	사례	주요 내용
장 려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3중세트 (김효빈 사무관)	□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혁신 3중 실시 ①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 은행·증권사 등에의 수수료 절감, 기업의 발행비용 약 50bp 인하 효과 ② P-CBO 대상에 '부동산신탁사' 추가 기준 마련 ☞ 무궁화신탁 發 불안 완화 ③ 적격투자자(QIB) 방식으로 '우량 중견기업'의 회사채시장 데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 ☞ 그간 없었던 '중견기업 회사채 시장' 조성의 초석 마련 * 기업이 회사채 발행시 신보가 전액보증, 무보증부채권은 산은이 직접 인수 → 신보·산은의 지원으로 중견기업이 자기명의로 회사채를 발행·유통 □ (성과) P-CBO 관련 법률개정·제도개선(대상 확대), 중견기업 전용 트랙 신설 등 기존 제도개선 및 혁신적인 신규 제도 마련 등 기업 자금지원 체계 강화 ① (P-CBO 직접 발행) 발행방식 변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신용보증기금법」 개정) ☞ P-CBO 발행비용 약 50bp 절감 가능 ② (P-CBO 부신사 편입) 무궁화신탁發 부신사 유동성 위기 완화에 크게 기여 ③ (QIB 프로그램*) 우량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 QIB 회사채 프로그램' 출범(4.30일) ☞ 1회차 2개사 총 1,000억원 발행 □ (적극행정) 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발로 뛰며 기관간·정책적 이견을 해결하여 신속하고 차질없게 정책을 추진 ① (P-CBO 직접 발행) 중소기업 편입한도 상향 및 국회 방문 설명 ② (P-CBO 부신사 편입) 부신사 현황·특성을 전수조사하고 별도의 편입 기준 마련 + 특성을 반영한 기준 신속 조정 실시 ③ (QIB 프로그램) 가장 신속한 일정으로 제도개선을 실시(보증범위에 연체이자 포함)하여 예정대로 채권 발행, 기업에 유동성 적기 제공
	금융위원회 및 범정부 재난 대응 적극 수행 (심우상 사무관)	□ (내용) 금융위의 모든 재난업무 수행과 더불어, 타부처 소관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업무 병행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국토부 소관) 중대본 지원('25.1월) * 중대본 회의 안건 작성 및 참석 등 - 경북·경남·울산 산불(산림청 소관) 중대본 지원(3~4월) * 중대본 회의 안건 작성 및 참석, 정부합동지원센터 인력 파견 등 □ (성과) ○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업무 수행 - 행안부 국가안전관리계획 평가 대응(1월) -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대응(1~2월) * 위원장·부위원장 인터뷰 포함 - 금융기관 재난 표준·실무매뉴얼 제정('25.1.13) 및 개정('25.4.15) - 국가핵심기반 마비(금융분야) 재난 표준·실무매뉴얼 제정('25.1.13) 및 개정('25.4.15) -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제출(4.15) ○ 타부처 소관 재난 업무 지원 - 제주항공 여객기 중대본 지원('24.12월~'25.1월) - 경북·경남·울산 산불 중대본 지원(3~4월) □ (적극행정) ○ 금융위 소관 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더불어 중대본 요청에 따른 타부처 소관 재난 지원업무까지 함께 수행 - 중대본 안건 작성 및 회의 참석, 중앙합동지원센터(경북·경남)에 인력(공무원, 협회, 보험사 등) 파견(출장) 등